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6.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처분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당사자	최*영[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호(가좌동, 센트럴시티뷰)]	
	정*호[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번길 7-1 ***호(연희동, 휴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① 위반내용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② 교육종류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250,000원(1/2 감경적용)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진납부기한 만료 시 과태료 250,000원이 다시 부과됩니다.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별표11] 법적 과태료 금액 : 500,000원	
의견제출기한	2024. 12. 16.	
납부 방법	인천 서구청 도로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가상계좌 등을 안내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도로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본관 4층 도로과 건설행정팀
	연락처	032-560-448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도로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